

# A Study on Direction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with Focused on Freedom of Information

Taek Kim\*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freedom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ccess right which improves transparent and speedy administration process. To build open Information, we scrutinize tha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change of civil service consciousness, attitude for open information by effectively open system circumstances. The Important thing is basic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an agency's FOIA Reference Guide, all agencies must notify potential FOIA requesters of the formal rules and requirements for the making and handling of FOIA request, through their FOIA regu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aper focused on Information access righ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proposed policy. In this paper,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freedom of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that scrutinize a theoretic analysis, second, to understand civil servant's attitud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ird, to suggest action plan and agenda for the better of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 Keyword : Information access, Democracy of information, Good Governance, freedom of information, rules and requirements

## I. Introduction

### 1. Purpose

오늘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Good Governance의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정부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어렵고 행정의 투명성이 없는 경우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패와 비리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조지오웰은 그의 명저 '동물농장'에서 권력집중과 감시 현상은 빅브라더의 탄생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행정이 국민의 감시 없이 이루어진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부지불식간에 부패가 싹트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

대로 이뤄지려면 국민과 정부 간의 정보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정의 정보를 알고 향유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우위도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은 많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양산하며 민원의 신속한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보우위를 악용하여 부정을 저지르기도 한다. 민원인의 경우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제도적,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부정, 부패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의 활동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정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면 부패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고 이미 발생한 부패, 부정을 적발하기도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모든 부정부패의 사전억제와 적발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1]

최근 Internet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조직 활동에의 적용으로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 First Author: Taek Kim, Corresponding Author: Taek Kim

\*Taek Kim(lasecurity@naver.com),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 Won University

• Received: 2015. 09. 07, Revised: 2015. 09. 24, Accepted: 2015. 10. 13.

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행정의 Online System 구축과 활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충하고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도 된다. 정보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요구권이다.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국민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과 문제영역에 대한 포괄적 정보와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보공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정보공개 건수가 2006년 26만 건, 2008년 30만 건, 2010년 42만 건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다. 1999년 법 시행 초기 2만 6천 건과 비교하면 정보공개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2]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원문정보 다운로드(112만 건)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57만 건)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어, 원문공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3]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결함,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행정 비밀주의적 행정문화 등의 이유로 국민과 정부 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결함은 입법을 통하여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과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민이 원하는 자료간의 괴리, 기관간의 정보공개 기준의 불일치, 모든 정보에 대한 청구-공개판단에 따른 낭비 그리고 국민의 중복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적절한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행정정보 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과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와 국민간 행정정보격차를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개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4]

## 2. Method

본 연구자는 각 정부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인식을 연구하였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가와 실무자를 면접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화 하였다. 이번 연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알권리요 신뢰 행정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그 의의가 있으며 특정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밝혀둔다. 정보 비공개 문제점 도출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정보 기관들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 공개 접수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 과정 그리고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비공개사유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를 하였고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담당 실무자의 인터뷰방법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 3. Literature Review

이 근주·김택(2000)의 정보공개 확대방안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 연구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직접 방문하여 NGO관계자들이 그 동안 조사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윤식(2010,2013)한국정보체계론,정보관리론은 전자정부시대의 정보시스템을 과학적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비공개사유의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5] 김성태(1999)의 행정정보체계론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언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6] 참여연대(2013)의 정보공개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라든지 각 기관의 거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로서 정보공개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7]

## II. Preliminaries

현대행정은 행정국가 내지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질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공무원 수의 증가, 정부 예산규모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의 확대,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됨에 따라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행정책임은 바로 공무원들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오늘날 행정책임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이유는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행정권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행정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권은 남용되고 조직화된 폭력으로 변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첫째, 행정재량권의 확대와 권력부패가능성이 문제라고 본다. 행정 기능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라 고도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에 의해 행정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둘째, 행정 권력의 강화이다.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책임행정의 필요성은 한층 커진다고 하겠다.[10]

셋째,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로 행정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공민비적 정치행정문화가 팽배해 있는 후진국에서 시민들은

권력의 지배대상일 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한 감시·비판·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행정책임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에서 연원된 것이므로, 특히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세계13번째로 제정될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가 실시된 지 십 수 년이 흘렀지만 정보공개의 실효성이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공개제도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인식의 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관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질 않으려고 하고 민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하나의 고발적 이슈로 인식하는데서 비롯하며 정보공개제의 제도, 의식, 관행의 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는 정보독점으로부터 오는 부정과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부패문제를 해결할 때 정보공개제도만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시기능이 그물망처럼 퍼져있어 정보공개는 타 분야에 서식하는 부패를 없게 만들어 주는 조력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1966년에 제정되어 누구라도(any person) 연방정부 기록에의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미국은 Access America 사이트를 마련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Online Government Contents를 만들어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12] (Table 1 참조)

Table 1. Non right of access contents

	Australia	Newzealand	Ireland	Holland	USA	France	Canada
1. Defense,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							
2. interal guide							
3. law enforcement							
4. effective economic operation					part		
5. public service management							
6. labour, honour, promise			part				
7. many demand of irrationality		part					
8. haste open							
9. study, statistics, analysis					part		
10. privacy							
11. commercial trade							
12. talking about secret							
13. law and propose data							

이와 같이 외국은 행정부의 정보를 국민모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정보공개가 선진

국처럼 제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 요인을 분석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정보공개 비공개 요인을 고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III 장에서는 비공개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IV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제안으로 법제도적 측면, 문화교육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 III. The Problems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면 많은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 둘째, 상황과 사례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준으로도 공개를 거부할 근거나 이유가 없는 정보가 그것이다. 첫째와 둘째에 해당되는 정보의 경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이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의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해당되는 정보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 현재로는 공개하여도 무방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사전적 공개가능 정보도 청구에 기초하여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중복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업무효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13]

#### 1. Causes of Closed system

Table 2. closed contents

division	total	secret under law	national security	people's life	judicial information	obstacle of fair duty	Violation of Privacy	business secret	special interest and disadvantage	non existence
2010	33008 (100)	10914 (33)	144 (1)	140 (1)	815 (2)	1100 (3)	2724 (8)	1054 (3)	497 (2)	15620 (47)
2009	26046 (100)	6685 (26)	123	173 (1)	1077 (4)	1358 (5)	3376 (13)	1140 (4)	531 (2)	11583 (45)
2008	20412 (100)	5253 (26)	98	242 (1)	964 (5)	1186 (6)	2439 (12)	942 (4)	633 (3)	8655 (43)
2007	18180 (100)	4149 (23)	103 (1)	186 (1)	851 (4)	1111 (6)	2888 (16)	913 (5)	486 (3)	7493 (41)
2006	12571 (100)	1843 (15)	61 (1)	130 (1)	870 (7)	793 (6)	2411 (19)	708 (6)	423 (3)	5332 (42)

source: Min. of ADMINSTRATION AND AUTONOMY(2011)

정보공개와 비공개 적용의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웨덴의 한정적 열거주의로서 비공개 문서를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비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개괄주의 입장으로서 비공개 사유를 개괄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비공개 결정은 공무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보공개와 비공개 사유로 국가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행정의 원활한 지장 등 비공개 사유로 지적되곤 한다.[14](Table 2 참조)

다음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핵심인 비공개 기준의 해석의 모호성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급 공공기관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여지가 많다.

## 2. Non Existence

정보자료의 부존재로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정보가 비공개로 분류한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공개 사유별 도표를 보더라도 2006년 5300여건이고 2010년 15000건이 넘고 있다. 정부가 행정정보공개 자료 목록을 상세하게 만들어 부존재로 인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2010년 비공개사유 Table 2를 보면 총 처리건수 33008건 중에서 부존재가 47%, 법령상 비밀 33%, 개인사생활 침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전체 1만6560건 중 5004건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비공개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로 4913건이었다. 다음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004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1746건, '재판관련 정보' 1700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729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언급한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청구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와 '기각', '인용'과 '부분인용' 등 4가지 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인용'이나 '부분인용' 처분이 나올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은 2011년 42.4%에서 2012년 25.3%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4.6%를 기록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15]

## 3. Difference of Agency

우선 기관별로 유사한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비공개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관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유사한 정

보를 한 기관에서는 공개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상이한 정보공개 기준의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16]

## 4. Misuse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 일부는 정보공개 목록 중에서 추상적이고 다량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행정관청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점에서는 오남용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기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오남용사례의 목록을 만들어 민원인들이 의식이 변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17]

## IV. The Proposed Policy

### 1.1 Legislative Approach

우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전반적인 접근을 Open System 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단의 여지를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첫째로 사전적인 정보공개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청구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사전적, 자발적인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개의 청구와는 무관하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백서 등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충분하여 홈페이지나 백서 등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내용과 중요도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guideline을 정하고 각급 행정기관 별로 구체적 list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이 경우 구체적 list를 공개하여 부처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개의 폭이 확장되고 동시에 행정기관 간의 공개의 정도도 균일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전 정보공개 list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조달부문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서 정례 공표 사항과 수시공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8]

#### 1.2 Accept without delay

다음으로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확대지정이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 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15조). 따라서 행정기관이 사전에 즉시처리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행정정보의 생산 시에 지정한다면 정보공개 처리가 훨씬 신속해질 수 있다.[19]

### 1.3 Concretization

사전적 공개목록의 지정과 함께 비공개 기준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의 조항을 구체화하는 데는 법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내용을 행정기관별로 구체화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비공개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0]

정부는 청구권자인 국민이 청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21]

## 2. Cultural·Educational Approach

### 2.1 Public Relations

무리한 정보공개요구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요구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정보사회의 정보교양문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정보교육은 정보 교과가 선택과 심화로 편성되어 일반 학생들에게 정보 교육의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교육의 강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22]

### 2.2 Openness

정보공개에 부정적인 공무원의 의식과 행정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기관별 문서관리규정상 대외비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서가 생산될 시점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공개와 관련된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하게 되고 비공개 기준의 해석과 적용도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관련 교육과 의식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23]

## 3.Ethical Approach

자유민주주의 실천의 전제가 되는 행정부의 민주성 확립은 행정환경,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움직이는 공무원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이는 행정국가현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현대행정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높은 실적을 바란다. 또한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모든 경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퇴화되고 단순한 경쟁적 수단에 따라 타인을 제압하려고 한다. 그와 같은 사회의식과 사회 문화로 인하여 공직자들은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윤리관의 결핍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국가도 그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리와 국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윤리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정보청구권자인 일반국민의 정보요구와 관련해서 관련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걸맞은 정보교양윤리가 중요하다고 본다.[24] 이를 위해 정보윤리 교육이 교육기관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 프라이버시 침해권 해악, 인터넷 상의 건전성을 함양하고 고양하도록 방송 등 언론의 계몽도 필요하다고 본다.[25]

## V. Conclusions

관료제의 병리증의 하나가 번문옥례(red tape)를 들고 있듯이 행정절차의 복잡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공개 및 목록의 편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당함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 규제, 비공개내용을 혁파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비공개결정, 처리기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이기 위해 업무 절차가 담긴 공공기관에 정보 메뉴얼을 배포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사례가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행정 불만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관례와 절차 등을 수시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비공개라든지 관료들의 비공개 지연 등 복지부동에는 형사벌적 징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정부기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IT 거버넌스의 목적은 행정 업무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 [26]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공개행정이 보장되도록 관과 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27]

## REFERENCES

- [1]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4, 2000.
- [2]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 survey, report, PSPD Movements, 4.11, 2013. NOCUT news Press, 8.8., 2008.
- [3]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320, 2013. Freedom of information Book,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utonomy, 1999-2015. <http://www.open.go.kr/>
- [4] Kim, Taek. "Bureaucratic Corruption Theory, K-study Pub., p.200, 2003.
- [5]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323, 2013.
- [6] Kim, Sung Tae. "New electronics of Government, Bub Mun sa Pub., 2008.
- [7]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 survey, report, PSPD Movements, 4.11, 2013. Park, Youn Ho. Public Administration, Bak Young Sa, Pub. p.699, 1985.
- [8] Yoo, Jong Hae.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Bak Young Sa Pub. p.150, 2004.
- [9] Park, Yong Chi. Public Administration, Koryowon Pub., p.877, 1987.
- [10] V.O. Key, Jr. Politics, Parties and Public Policy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p.763-764, 1976.
- [11] Yoo, Jong Hae.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Bak Young Sa Pub., 2004.
- [12]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65, 2000.
- [13]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66, 2000.
- [14]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2000.
- [15] Information Open Center for Transparency 5.23, 2014. CHOSUN Press, 4.25, 2011.
- [16] Kim, Taek. "Bureaucratic Corruption Theory, K-study Pub., 2003.
- [17]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65, 2000.
- [18]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72, 2000.
- [19]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82, 2000.
- [20]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100, 2000.
- [21]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100, 2000.
- [22] Jin Sung Koon, "A Study on improvement of informatio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2, No. 2, December. p.32, 2014
- [23] Lee Keun Joo, Kim Taek. "information forum, SIT, University of Seoul, Prime Minister Office, p.123, 2000.
- [24] Kang, Kyung Kuen. "Information Act, Practice and Contents", Citize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formation forum, press, reformation, citizen, movements.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Hwa Sa Pub., 2013.
- [25] Kwon, Ki Heon. "information system theory", Buplyuel Pub., 2003.
- [26] Seok-In Lee. "A Study on IT Governance Critical Success Factors in Korean Government Integrated Data Cente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12, December, p.51, 2013.
- [27] Chon Dae Yoon, "information policy problem and treatments through information Act of Korea" Korea Policy Society Summer Proceedings, 1998.

### Authors



TaeK Kim received the B.S., M.P.A. and Ph.D. degre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ology from Kang Won University and DongGuk University, Korea, in 1986, 1991 and 2015,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Jung Won University, Chung Buk, Korea, in 2011.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 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Information Culture, and internet Criminals